18-01-141123

◀주의사항▶

- 국가기술자격증은 관계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제시해야 합니다.
- 2 국가기술자격취득자는 취업 중인 사업체 등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이의 정정을 요청해야 합니다.
- 3. 국가기술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, 차용, 알선하면 「국가기술자격법」제26조 제3항에 따라 1년 이 하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,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 주는 경우 등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됩니다.
- 4.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은 지체 없이 국가기술자격증을 주무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합니다.

국가기술자격증

■ 자격번호: 18203050611Q

■ 자격종목: 정보처리기사

명: 최영진



위 사람은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2018년 11월 16일

2018년 11월 20일

과학기술정보통신부

※ 본 국가기술자격증은 「국가기술자격법」 제23조에 따라 이사장이 확인 · 발급함.

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



■ 자격증 취득 내용

종목명	자격증번호	합격일		
070		발급일		
지게차운전기능사	15631508943J	2015.06.12		
1/11/12/12/10/1		2015.07.15		
기중기운전기능사	15652004323Q	2015.11.27		
기둥기군전기둥작		2015.12.10		
이하여백				
	2444			
		777		
		STATE OF THE STATE		

■비 고

• 변경사항

날짜	변경항목	변경 후 사항	확인
			9

• H

2014.11.21부터 주의사항 3번의 벌금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변경

위 자격증의 진위확인은 공단 홈페이지(Q-net.or.kr)를 통하여 확인 가능합니다.(대표전화 1644-8000)



